

2020년도 뷰티제품 타깃국가 해외인증사업 2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지역 뷰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재)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뷰티제품 타깃국가 해외인증사업」 2차 지원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6월 9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뷰티제품 타깃국가 해외인증사업
- 사업목적 :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타깃 국가별 해외 인증 관련 지원으로 지역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무역장벽 극복
- 신청자격 : 대구지역 소재 뷰티 관련 산업(원료, 화장품 등)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 기업 포함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0. 11. 30
- 세부과제별 지원 개요
 - 선정규모 : 3개社 정도
 - 지원금액 : (신규시장 수출제품 컨설팅 지원) 8,000천원 정도 / 1社당
(해외인증 제품 기업지원) 4,500천원 정도 / 1社당
(타깃국가별 인증획득) 6,000천원 정도 / 1社당

□ 지원분야 및 내용

프로그램	지원분야	지원금액	비고
신규시장 수출제품 컨설팅 지원	- 신규시장 해외인증 획득 관련 컨설팅 지원 - 화장품 제조시설 인증 컨설팅 지원 등	~8,000천원 내외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기업부담금은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 (타깃국가별 인증획득 제외)
해외인증 제품 기업지원	- 해외인증 제품 성분분석(유효성 평가) 지원 - 해외인증 제품 표기사항 변경 지원 - 해외인증 제품 디자인 변경 리뉴얼화 지원 등	~4,500천원 내외	
타깃국가별 인증획득	- 수출제품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수출제품 해외 상표등록 비용 지원 등	~6,000천원 내외	

※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 가능

※ 지원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 기 획득한 해외인증 및 상표등록의 갱신이 가능하며, 신규 인증획득 경우 접수증으로 인정 가능

※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후 지급(후정산)

2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 대구시청 홈페이지, (재)대구테크노파크 및 한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trade.daegu.go.kr>)

□ 접수기간 : 2020. 6. 17(수) ~ 6. 19(금)

□ 신청방법

- 반드시 ① [온라인 신청] 후 ② [오프라인 접수] 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누락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①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trade.daegu.go.kr>)
→ 회원가입 → 사업참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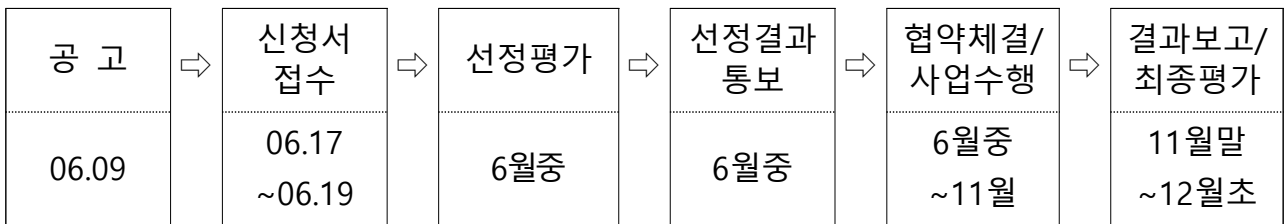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은 기업 일반정보(기업명, 업종, 주소 등), 담당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입력(별도 서류제출 없음)

② [오프라인 접수] 아래 제출서류를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 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별첨 1, 별첨 2 포함
- 서식 2. 기업 현황 카드 1부
- 서식 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증빙 및 첨부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기업 재무제표(최근 3년)
 - (필수)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최근 3년, 붙임. 고용보험 출력방법 참고)
 - (필수) 수출실적증명서(최근 3년, 수출기업은 필수)
 - (해당시)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
 - (해당시) 연구개발전담부서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해당시) 지식재산권 증빙서류(특허, 디자인 등)
 - (해당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cGMP, ISO 등 기타 인증 서류

□ 추진절차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접수처	(재)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
주 소	(우)42158,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136
담당자	이재욱 선임연구원 (TEL. 053-770-2306, 이메일 leejaewook77@ttp.org)

3

선정 및 평가방법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후 제출된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지원기업 결정
- 평가 60점 이하는 지원 제외하며, 평가 고득점 우선 순위로 선정

□ 결과발표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4

우대사항,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 준수 기업 및 사업 기간 내 고용 가능 기업일 경우 우대

□ 지원제외 대상

- 과제 심의 결과통보 이전에 추진한 과제
- 공고한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
- 과제종료일 이전까지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
- 사업기간 내 대구 외 지역으로 본사 및 주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또는 대표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사항

- 기업의 대응자금(현금)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율은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등에 따라 차등 부담
- 모든 지원은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원

- 지원금은 전체예산, 기대효과, 민간부담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될 수 있음(특히 과대계상 예산의 경우 특별관리 예정)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 혹은 중복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중단’, ‘지원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예정이며,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신청서 내 정성적·정량적 목표치는 달성가능한 수치를 작성